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전략정책·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군부대·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영관급장교로 보하던 정책관리담당관을 앞으로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의전담당관을 앞으로는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국방정책실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담당관을 국방운영개혁담당관으로, 국방혁신기획관 군구조혁신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조정실 데이터정책담당관을 데이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이관하고, 국방정책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국방정보화국으로 이관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2명(5급 2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9.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군사보좌관)”을 “(국방보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보좌관”을 “국방보좌관”으로, “영관급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별정직공무원으”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보좌관”을 각각 “국방보좌관”으로 한다.

-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지도·감독”을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 및 지능정보화정책관”을 “국방개혁기획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으로, “한다”를 “하고, 국방개혁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능정보화정책관”을 “국방개혁기획관”

으로, “제41호”를 “제3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관 ·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을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으로,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및 데이터정책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를 “군구조개혁담당관 ·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5호 중 “담당관 및 팀”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시행
4. 국방개혁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계획 보고
7. 국방개혁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9. 군구조 분야 개혁정책의 총괄·조정

제4조의2제15항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중 “정보화 관련”을 “국방개혁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정책담당관”을 “국방운영개혁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항 및 제19항을 각각 삭제한다.

1.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개혁정책의 총괄·조정
2. 5년 단위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개혁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개혁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4.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5.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6. 국방개혁특별자문위원회 운영

7. 국방개혁 관련 대내·외 교육과정 운영

8. 국방개혁 관련 연구용역 및 세미나 기획·추진·관리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1호 및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를 “제31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대북전략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대북전략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방위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북한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방위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으로,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인도태평양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을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인도태평양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북전략과장”을 “북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항을 삭제한다.

9.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제10조제1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밑에 국방인공지능정책과·데이터정책과·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 정책·전략의 수립·시행
2.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
3. 국방분야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발전
4. 국방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업의 계획·조정·관리
5. 국방분야 인공지능 인재양성 업무
6.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협의체 운영 업무

7. 인공지능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8. 국방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발전 업무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인공지능 관련 사항
- ④ 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데이터 전략·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3.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4. 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
 5. 국방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6. 국방분야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조정
 7. 국방분야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
 8.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국방데이터 공유·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11.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⑤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2.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성과점검·관리
3. 국방 드론·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4. 계열화·모듈화 기반 무인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
5. 드론·로봇 분야 민·군 협력사업 기획·조정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장 밑에 국방정보화정책과·국방정보화기반과·사이버전자기정책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을 두며, 국방정보화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3.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화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6.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7.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8.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9.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10.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11.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업무
12.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13.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국방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④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조정
5. 국방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의, 군 음성통신망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8. 국방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기관 간 협력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통제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다자간 협력 및 발전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10.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11.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⑥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디지털콘텐츠 발전에 관한 업무
3. 국방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8.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상호운용성 연동·표준에 관한 업무

제11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수관리국장 밑에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및 군수지능화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물자관리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발전
4. 육·해·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육·해·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조정·통제
6.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7.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8.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9. 무기체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10.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11.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12. 군수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13.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계획수립·제도발전
14.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15.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한·미안보협의회 산하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19.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20.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21.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2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조정
23.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24.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25.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수 관련 사항

④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4.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
·조정
5.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6. 성능개량·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7.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제도 발전 업무
8.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9.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11.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12. 신뢰도·가용도·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
업무
13. 종합군수지원 정책·제도 발전 업무
14.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5.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통제
16.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7.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초빙 교육 관련 업무

18.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19.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20.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21.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2.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 발전 업무

23. 부품 단종(斷種) 관리 정책·제도 발전 업무

24.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25.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26.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27.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8. 장비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⑤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9.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10.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1.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13. 물자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 ⑥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3. 탄약획득·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검사·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 ⑦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통제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추진
 16.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평가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발전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⑧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중·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
기 및 검토

4.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
의 조정·통제

5. 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의 유지보수업무 조정·통제

6. 군수 내·외부 체계 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의 보좌

10. 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제11조의6(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사시설국장 밑에 시설기획과·시설제도과·건설관리과·부대건
설과·국유재산과·군주거정책과·환경소음팀 및 지뢰대응활동팀을
두며, 시설기획과장·시설제도과장·건설관리과장·부대건설과장·

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4.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6.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7.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보호구역 등의 설정·변경·해제에 관한 업무
9.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0.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시설 관련 사항

④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2. 신기술·신자재 검토 및 보급
3.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4.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5.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군 공사의 설계 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7.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 및 관리
8.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1.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

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2.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6.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8.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9.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1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1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12.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13.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14.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대국회 홍보
- ⑥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3.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5.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6.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대국회 홍보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⑦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부동산·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⑧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관리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 군 관사·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

⑨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조정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9. 소음·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조정
12.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운용·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⑩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시행
 2.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조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2. 지뢰의 탐지·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5의2와 같다.

제20조의5를 삭제한다.

제20조의6의 제목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국방연구개발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을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0조의7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1”을 “685”로, 일반직 계 “663”을 “677”로, 고위공무원단 “16”을 “18”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4”를 “3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5”를 “56”으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2”를 “215”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

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3”을 “165”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4”를 “76”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4”을 “688”로, 일반직 계 “666”을 “680”으로, 고위공무원단 “16”을 “18”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4”를 “3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4”를 “217”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3”을 “165”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4”를 “76”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③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의2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인공지능정책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 및
제20조의6제2항 관련)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8년 1월 30일)

총계	15
일반직 계	15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 ·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8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8년 4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4. 중동아프리카정책과(존속기한: 2027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5. 국방연구개발기획과(준속기한: 2027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별표 7]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1.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

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

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

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2.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3. 제2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
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
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u>		
		<u>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u>		
		<u>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u>		
		<u>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u>제2조(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u>		<u>제2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u>		
<u>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u>		<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u>		
		<u>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u>		
		<u>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u>		
		<u>다.</u>		
② <u>군사보좌관</u> 밑에 정책관리담		② <u>국방보좌관</u> -----		
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u>영관급</u>		----- <u>부이사</u>		
<u>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u>		<u>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u>		
<u>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u>		----- <u>별정직공무원으</u>		
<u>로 보한다.</u>		<u>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u>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		③ -----		
에 관하여 <u>군사보좌관</u> 을 보좌한		----- <u>국방보좌관</u> -----		
<u>다.</u>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④ -----		
관하여 <u>군사보좌관</u> 을 보좌한다.		---- <u>국방보좌관</u>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제3조(대변인) ① ~ ③ (생략)</u>		<u>제3조(대변인) ① ~ ③ (현행과</u>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6. (생략) 7. 삭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u>지도·감독</u> 9.·10. (생략) ⑤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 및 <u>지능정보화정책관</u>으로 하며, <u>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 및 지능정보화정책관</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u>지능정보화정책관</u>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u>제41호</u>까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8. ----- <u>운영 지원</u> 9.·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국방개혁기획관</u>으로 하며, <u>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u>----- ----- ----- ----- ----- <u>하고, 국방개혁기획관</u>은 <u>장성급장교</u>로 보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국방개혁기획관</u>----- ----- ----- <u>제37호</u>----
--	--

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관 ·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및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

-----.

⑥ -----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 -----

----- 기획총괄담당관 · 국군조직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 군구조개혁담당관 ·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 -----

로 보한다.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4. (생략)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 ⑭ (생략)

⑮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지능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2의2.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2의3. 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3. 국방지능정보화에 따른 업무 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4. 국방지능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

-----.

⑦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담당관-

⑧ ~ ⑭ (현행과 같음)

⑮ 군구조개혁담당관-----

-----.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삭 제>

<삭 제>

3.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의 수립·시행

4. 국방개혁 각 시행기관·부서
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5.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

<u>정 및 조정</u> 6. <u>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업무</u> 7. <u>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u> 8. <u>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u> 9. <u>국방지능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u> 9의2. <u>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u> 10. <u>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u> 11. <u>국방지능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u> 12. <u>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u> ⑯ <u>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1. <u>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전략·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u>	<u>석·평가</u> 6. <u>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계획 보고</u> 7. <u>국방개혁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u> 8. <u>국방개혁위원회 운영</u> 9. <u>군구조 분야 개혁정책의 총괄·조정</u> <삭 제> <삭 제> <삭 제> 10. ----- -- <u>국방개혁에 관한</u> ----- ⑯ <u>국방운영개혁담당관</u>----- ----- -----. 1. <u>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개혁정책의 총괄·조정</u>
--	---

2. <u>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u>	2. <u>5년 단위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개혁추진계획의 수립·시행</u>
3. <u>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u>	3. <u>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개혁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u>
4. <u>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u>	4. <u>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u>
5. <u>국방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u>	5. <u>미래국방전략위원회 운영 지원</u>
6. <u>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조정</u>	6. <u>국방개혁특별자문위원회 운영</u>
7. <u>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u>	7. <u>국방개혁 관련 대내·외 교육과정 운영</u>
8. <u>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u>	8. <u>국방개혁 관련 연구용역 및 세미나 기획·추진·관리</u>
9. <u>국방데이터 공유·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삭 제></u>
10. <u>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u>	<u><삭 제></u>
11. <u>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u>	<u><삭 제></u>

<u>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u><삭 제></u>
<u>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u><삭 제></u>
<u>⑰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 장을 보좌한다.</u> <u>1.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 책 및 제도의 발전</u> <u>2. 국방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조정</u> <u>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 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u> <u>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조정</u> <u>5. 국방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 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u> <u>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 의, 군 음성통신망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u> <u>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u>	<u><삭 제></u>

8. 국방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11. 삭제

12. 삭제

⑬ 삭제

⑭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1.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디지털콘텐츠 발전에 관한 업무

3. 국방분야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5.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

문

6.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8.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9.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국

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방혁신기획관 밑에 국방혁
신담당관 및 군구조혁신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영
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
좌한다.

1. 국방혁신기획관 내 업무 종
합 · 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 ·
추진

2. 국방혁신 관련 법령 제 · 개
정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홍보전략 수립 · 이
행

<삭 제>

4.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운
영에 관한 사항

6. 국방혁신 대내·외 교육과정
운영

7. 국방혁신 관련 연구용역, 세
미나 기획·추진 및 결과 관
리

8. 국방혁신기획관 내 인사, 예
산, 보안, 전시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행

9. 그 밖에 국방혁신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혁신 정책 총괄·조정

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변
경

3. 국방혁신 5년 단위 추진계획
의 수립·시행

4.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5. 국방혁신과제 추진실적 분석

· 평가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국방

혁신 추진 실적·계획 보고

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④ (생략)

⑤ 방위정책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1호 및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대북전략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대북전략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방위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 및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31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1호-----.

⑥ -----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북한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방위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 -----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인도태평양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⑧ (생략)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⑩ ~ ⑰ (생략)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⑲·⑳ (생략)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기관 간 협력

-----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인도태평양정책과장-----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북한정책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⑩ ~ ⑰ (현행과 같음)

⑱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 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⑲·⑳ (현행과 같음)

<삭제>

3. <u>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통제</u> 4. <u>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u> 5. <u>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u> 6. <u>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 협력 및 다자협업체 운영</u> 7. <u>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다자간 협력 및 발전</u> 8. <u>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u> 9. <u>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u> 10. <u>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u> 11. <u>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u>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⑬ (생략) ⑭ 예비 전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5. (현행과 같음)
--	---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7. (생략)

⑮ ~ ⑳ (생략)

제11조(자원관리실) ① 자원관리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원
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
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및 군사
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③ 군수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
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
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
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⑮ ~ ⑳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1호의3의 사항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삭제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
과 · 장비관리과 · 물자관리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안전관리
과 · 군수지능화팀 · 시설기획과
· 시설제도과 · 건설관리과 · 부
대건설과 · 국유재산과 · 군주거
정책과 · 환경소음팀 및 지뢰대
응활동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
· 물자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
과장 · 시설기획과장 · 시설제도
과장 · 건설관리과장 · 부대건설
과장 · 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
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
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
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
팀장 ·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
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
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

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
정·통제 및 제도 발전

1의2. 삭제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
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발전

4. 육·해·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4의2. 육·해·공군 공통군수지
원 품목 선정·조정·통제

5.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
도 발전

5의2.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
품 활용 확대

5의3.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
· 통제

5의4. 무기체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
제도에 관한 사항

5의5.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
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
무

- 5의6.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 6. 국방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계획수립·제도발전
-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 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10.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 위원회에 관한 사항
- 11.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 13.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 14.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15.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 15의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조정
- 1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 1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1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
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
항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
립과 제도 발전

1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
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1의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
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3.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

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3의2. 성능개량·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3의3.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제도 발전 업무

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5.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7의2. 신뢰도·가용도·정비도
(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7의3. 종합군수지원 정책·제도
발전 업무

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
(CSRP)업무의 조정·통제

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초빙 교육

관련 업무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 추진 관련 업무

15의2.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 발전 업무

15의3. 부품 단종 관리 정책·제도 발전 업무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⑨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
능력 판단·운영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
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
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
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삭제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10.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
지원 사항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
업관리
12.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
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2의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
무의 조정·통제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3. 탄약획득·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검사·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12의2. 삭제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 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
관 협조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
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
정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
무 조정·통제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
항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
전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
립·추진

16.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과의 협조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조정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중

합 조정·평가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발전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
의 총괄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
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정보화 관련 중·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4.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통제

5. 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
의 유지보수업무 조정·통제

6. 군수 내·외부 체계 간 통합
·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

(CIO)의 보좌

10. 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
계 관련 사업관리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
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
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
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3의2.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
행자 지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4. 삭제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
감독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11.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
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보호구역 등의 설정·변경
·해제에 관한 업무

13.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4.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시설 관련 사항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2. 삭제

3. 신기술·신자재 검토 및 보
급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
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시공
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
여·반환 및 관리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15.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
조정

2.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
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
리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조정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

처와의 협의

5. 삭제

6. 삭제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8. 삭제

9. 삭제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

업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

의위원회의 운영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

구

16.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17.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

략 수립

18.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

획 수립

19.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

리

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

·대국회 홍보

⑩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
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부
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
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추진전략 수립

3.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5.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6.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대국회 홍보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

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
에 관한 사항

8. 삭제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
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
립·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
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
와의 협의

3.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
의 수립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
황관리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
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⑮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관리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 군 관사·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보수에 관한 사업 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
문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
계 구축·운영 및 유지

⑭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시행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
책 수립

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조
정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
한 법령·제도 정비

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9. 소음·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

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조정

12.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

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

음관리에 관한 업무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

운용·결산 및 검사 등에 관
한 업무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지방

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
원회의 운영

⑳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
· 시행

2.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
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조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2. 지뢰의 탐지·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

한 사항

㉑ 삭제

㉒ 삭제

제11조의2 (생략)

<신설>

제11조의3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밑에 국방인공지능정책과·데이터정책과·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 정책·전략의 수립·시행
2.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
3. 국방분야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발전
4. 국방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업의 계획·조정·관리

5. 국방분야 인공지능 인재양성
업무

6.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협의체 운영 업무

7. 인공지능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8. 국방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발전 업무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인공지능
관련 사항

④ 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데이터 전략·정책
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3.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4. 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

5. 국방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

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6. 국방분야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조정

7. 국방분야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

8.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국방데이터 공유·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11.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⑤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 기획·조정

2.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성과점검·관리

<신 설>

3. 국방 드론·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4. 계열화·모듈화 기반 무인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

5. 드론·로봇 분야 민·군 협력사업 기획·조정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장 밑에 국방정보화정책과·국방정보화기반과·사이버전자기정책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을 두며, 국방정보화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3.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화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6.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7.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8.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9.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10.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11.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업무
12.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13.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국방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④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조정

5. 국방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의, 군 음성통신망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망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

8. 국방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
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
토·조정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
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
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
한 총괄 조정·통제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
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
다자간 협력 및 발전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
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 · 기관과의 협력

10.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

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

· 통제

11.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부부처 ·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⑥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디지털콘텐츠 발전

에 관한 업무

3. 국방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 제

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

무

5.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신 설>

7.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8.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상호운용성 연동 · 표준

에 관한 업무

제11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

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② 군수관리국장 밑에 군수기획

과 · 장비관리과 · 물자관리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안전관리

과 및 군수지능화팀을 두며, 군

수기획과장 · 물자관리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

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

수지능화팀장은 과학기술서기

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

로 보한다.

③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발전

4. 육·해·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육·해·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조정·통제

6.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7.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8.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9. 무기체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10.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11.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목

록관리에 관한 업무

12. 군수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13.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계획수립·제도발전
14.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15.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한·미안보협의회의 산하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19.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20.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21.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2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조정
23.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24.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25.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
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
항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수 관련 사항

④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
립과 제도 발전

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4.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장
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5.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
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
정

6. 성능개량·창정비 통합 집행
업무

7.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
· 제도 발전 업무

8.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
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9.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11.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12. 신뢰도·가용도·정비도(R
AM) 업무, 야전운용지원 분
석 및 개선업무
13. 종합군수지원 정책·제도
발전 업무
14.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5.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
(CSRP)업무의 조정·통제
16.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7.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초빙 교육
관련 업무
18.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
UM) 활동 지원 사항
19.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
센터 조성 관련 업무
20.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21.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

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
추진 관련 업무

22.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 발
전 업무

23. 부품 단종(斷種) 관리 정책
· 제도 발전 업무

24.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25.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
리 및 감독 업무

26.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27.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8. 장비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⑤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
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
능력 판단·운영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

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9.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10.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1.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13. 물자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⑥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

· 조정

3. 탄약획득 · 비축업무 및 탄약
관리 업무 조정 · 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 검사 · 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
에 관한 사항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 · 관 협
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
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 · 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 · 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
용에 관한 사항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
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
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 · 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⑦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

무 조정 · 통제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 추진

16.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조정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 · 평가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 · 발전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⑧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중 · 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신 설>

4.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통제
 5. 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의 유지보수업무 조정·통제
 6. 군수 내·외부 체계 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의 보좌
 10. 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 제11조의6(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군사시설국장 밑에 시설기획과·시설제도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과·국유재산과·군주

거정책과 · 환경소음팀 및 지뢰 대응활동팀을 두며, 시설기획과 장 · 시설제도과장 · 건설관리과 장 · 부대건설과장 · 국유재산과 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 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 대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 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 로 보한다.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 · 조 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 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4.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시행 자 지정 및 국방 · 군사시설사 업계획의 승인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 ·

감독

6.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7.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
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보호구역 등의 설정·변경·
해제에 관한 업무

9.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0.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시설 관련 사항

④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2. 신기술·신자재 검토 및 보
급

3.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4.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
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5.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군 공사의 설계 심의·시공
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7.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
여·반환 및 관리

8.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1.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

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
조정

2.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
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
리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조정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

처와의 협의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6.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
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의 운영
 8.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
구
 9.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1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
략 수립
 1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
획 수립
 12.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13.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
리
 14.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
·대국회 홍보
- ⑥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3.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5.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6.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대국회 홍보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⑦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부동산·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⑧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관리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
에 관한 업무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
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
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 군 관사·간부숙소 등 주거
시설 신축·보수에 관한 사업
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
문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
계 구축·운영 및 유지

⑨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시행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
책 수립

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조

정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9. 소음·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조정
12.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운용·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 운영

⑩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

· 시행

2.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조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 중

양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2. 지뢰의 탐지·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
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
무

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
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
한 사항

<신 설>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 설>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
체적인 사항은 별표5의2와 같
다.

<삭 제>

제20조의5(첨단전력기획관) ① 첨
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첨단전력기획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 2028
년 3월 31일-----
-----.

<신 설>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1</u>	<u>685</u>	+14
·	·	·	
·	·	·	
일반직 계	<u>663</u>	<u>677</u>	+14
고위공무원단	<u>16</u>	<u>18</u>	+2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4</u>	<u>36</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 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5</u>	<u>56</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u>212</u>	<u>215</u>	+3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u>	<신 설>	<u>2</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3</u>	<u>165</u>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u>74</u>	<u>76</u>		+2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4</u>	<u>688</u>	+14
·	·	·	
·	·	·	
일반직 계	<u>666</u>	<u>680</u>	+14
고위공무원단	<u>16</u>	<u>18</u>	+2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4</u>	<u>36</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 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6</u>	<u>57</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 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14</u>	<u>217</u>	+3

<u>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u>	<신 설>	<u>2</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 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 연구사	<u>163</u>	<u>165</u>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 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 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 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 생주사보	<u>74</u>	<u>76</u>	+2
·	·	·	
·	·	·	